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7월 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4년 7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 제안이유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이 제정(2004. 1. 29, 법률 제7124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외국인도 20세이상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리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함.(안 제3조)
- 주민투표의 대상(안 제4조)
 - 구·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 시 및 구·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사항
 -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5조)
 - 청구인대표자는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임하도록 하고,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서명요청기간은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이내로 하고, 10일 이내에 서명 보정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1조)
 -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고 주민투표청구서는 대표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고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10조)
 -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7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설치하여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 등을 심사·결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7일 이내,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는 열람기간·이의신청결과통지·보정기간 종료 후 14일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금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 주민투표와 관련한 공표·광고는 관보·시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시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병행하도록 함.(안 제16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주민투표의 발의와 진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p> <p>○ 주민투표대상에서 지방채,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과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지?</p> <p>○ 주민투표에 의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면 어느 정도 표를 얻어야 하며 득표율 제한이 있는지?</p>	<p>○ 먼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의 수만큼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에서 서명이 유효한지 투표요건에 맞는지 등을 심사하여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투표는 일반 선거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p> <p>○ 기금은 일반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데 기금 설치여부를 결정할 때 주민들의 청구가 있으면 대상이 됨.</p> <p>○ 투표자의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며 득표율 제한은 없습니다.</p>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없 음
- 나. 반대토론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의안 번호	제265호
의결 년월일	2004. 7. 16 (제113회)

제출년월일 : 2004. 7. 2.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이 제정(2004. 1. 29, 법률 제7124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외국인도 20세이상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함.(안 제3조)
- 나. 주민투표의 대상(안 제4조)
 - 구·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 시 및 구·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사항

○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청구인대표자는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임하도록 하고,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서명요청기간은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이내로 하고, 10일이내에 서명보정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1조)

바.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고 주민투표청구서는 대표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고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10조)

아.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7인이상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설치하여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 등을 심사·결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7일이내,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는 열람

기간·이의신청결과통지·보정기간 종료 후 14일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
방문금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주민투표와 관련한 공표·공고는 관보·시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이상과 시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병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 및 구·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

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의장이 부시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다만, 주민투표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시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이상과 시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	비고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